

## 11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(280209) / 시·군 공동서비스

항목	내 용										
목적	장애인 건강의 유지·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형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										
추진지역 (19개시군)	수원	성남	부천	용인	안산	안양	평택	시흥	화성	광명	군포
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
	광주	김포	이천	안성	오산	하남	의왕	여주	양평	과천	
	X	○	X	○	○	○	○	X	X	X	
	고양	남양주	의정부	파주	구리	양주	포천	동두천	가평	연천	
○	X	○	○	○	X	X	X	X	X		
이용대상 (소득·연령· 육구·중복 기준 모두 충족)	소 득 기 준	없음									
	연 령 기 준	만 4세 이상									
	육 구 기 준	등록 장애인									
	우 선 순 위	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고연령자									
	중 복 제 한	일상돌봄 서비스(특화) 찾아가는 맞춤형재활서비스,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재활 서비스,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」									
제공기관 기준	제 공 기 관	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									
	제 공 인 력	<①, ②,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>									
		① 국가 자격증	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”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(1급, 2급), 생활스포츠지도사(1급, 2급),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,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								
② 국가 자격증	초중등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(체육교육)										
③ 학위 소지자	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										
※ “군” 단위 지역과 ‘성장촉진지역’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											
지원기간 및 재판정	① 기 간 : 12개월 ② 재판정 : 재판정 1회(최대 24개월 이용)										
서비스 횟수/가격 /결제	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② 개별(1:1) :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(월 4회), 회당 50분 ④ 집단(1:2~3) :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(또는 주 2회) (월 6회), 회당 50분 ⑤ 집단(1:4~5) :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(월 8회), 회당 50분										

항목	내 용
----	-----

② 서비스 가격 : 월 20만원 ~ 24만원 (가격탄력제, 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
구 분	정부지원	본인부담
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	180,000원(90%)	20,000원 ~60,000원
2등급(기준중위소득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	160,000원(80%)	40,000원 ~80,000원
3등급(기준중위소득120% 초과~160% 이하)	140,000원(70%)	60,000원 ~100,000원
4등급(기준중위소득160% 초과)	120,000원(60%)	80,000원 ~120,000원

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

등급	정부지원금		
	개별(1:1) 주 1회 / 월 4회	집단(1:2~3) 주 1회(주 2회) / 월 6회	집단(1:4~5인) 주 2회 / 월 8회
1	45,000원	30,000원	22,500원
2	40,000원	26,000원(6회차 30,000원)	20,000원
3	35,000원	23,000원(6회차 25,000원)	17,500원
4	30,000원	20,000원	15,000원

서비스 내용  
·  
절차

① 서비스 내용

※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(산책, 자유수영 등) 제공불가

구분	서비스 내용	비고
기본 서비스	㉠ 사전체력검사 : TGMD-2,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	연 1회
	㉡ 사전 상담: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	연 1회
	㉢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, 스트레칭, 근력운동,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	주 2회 월 8회 (요일을 달리하여)
	㉣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(필요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)	반기별 1회
	㉤ 사후검사 : TGMD-2,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	연 1회

\*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

② 서비스 제공절차

- 1단계 :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
- 2단계 :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- 3단계 :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
- 4단계 : 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

항목	내 용
	③ 서비스 장소 (혼합) -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-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- 대상자 자택
안전관리 기준	▷ 안전관리기준 :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- (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) 1. 배상/상해 보험증명서, 2. 차량보험가입증명서, 3. 차량등록증 - (제공기관 준비사항) 1. 이용자 안전교육대장, 2. 비상연락망, 3. 보호자 동의서, 4. 여행자보험, 5.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
유의사항	① 등록유형 : 기관방문형(서비스 제공시 재가+집단 허용) ② 결제시기 : 실시간 결제(회당 결제) ③ 효과성 검증 : 사전·사후검사 2회 이상(시작 전, 종료 시) ④ 서비스 만족도(모니터링) 조사 실시 : 연 2회 (반기별 실시) ※ ④ 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내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을 활용